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밀원수 조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석재산업 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산사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산림생태복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재배단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남부권의 채종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밀원수 확대 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민북지역 산림복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9조제2항 중 “백두대간보전팀을”을 “산림생태복원과를”로,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백두대간보전팀장”을 “산림생태복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산림복원재료 수급 및 산업육성·지원
13.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타당성 평가
14.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지원
15. 비무장지대(DMZ)일원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16.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0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림청”을 “산림청과 그”로, “정원”을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02”를 “309”로 하고, 일반직 계 “297”을 “30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6”을 “17”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1”을 “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66”을 “67”로 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전산사무관 “4”를 “5”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0”을 “43”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4 다음에 “임업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13”을 “3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8”을 “31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7”을 “18”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0”을 “19”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69”를 “7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전산사무관 “4”를 “5”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5”를 “48”로 하며, 운전서기보 4 다음에 “임업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6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2”를 각각 “35”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를 “5”로 하며, 임업연구사 “9”를 “11”로 한다.

별표 6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을 각각 “3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를 “5”로 하고, 임업연구사 “9”를 “1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15”를 “71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700”을 각각 “704”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4”를 “25”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5”를 “48”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24”를 “12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723”을 “72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708”을 각각 “712”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4”를 “25”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3”을 “5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24”를 “12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의2 관련)

1. 산림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산림보호국 산림생태복원과	1명 (7급1)	2023년 9월 30일까지

2. 산림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산불 진화 (산림항공본부)	15명 (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16명 (6급 1명, 7급 4명, 8급 6명, 9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산림보호국) ① (생략)	제9조(산림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 · 산불방지과 · 산사태방지과 · 산림병해충방제과 및 <u>백두대간보전팀</u> 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 <u>기술서기관</u> · 행정사무관 또는 <u>임업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② ----- ----- ----- <u>산림생태복원과</u> 를 ----- ----- <u>기술서기관</u>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u>백두대간보전팀</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u>산림생태복원과</u> 장-----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산림복원재료 수급 및 산업육성 · 지원</u>
<u><신 설></u>	<u>13.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타당성 평가</u>
<u><신 설></u>	<u>14.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 취소 및 지원</u>
<u><신 설></u>	<u>15. 비무장지대(DMZ)일원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 · 시행</u>
<u><신 설></u>	<u>16.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u>

<u>제10장의2 평가대상 정원</u> 제23조의2(<u>평가대상 정원</u>) <u>산림청</u> 소속기관에 두는 <u>평가대상 정원</u> 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 와 같다.	<u>성·운영</u> 제10장의2 <u>평가대상 조직 및</u> <u>정원</u> 제23조의2(<u>평가대상 조직 및 정</u> <u>원</u>) <u>산림청과 그 ----- 조직</u> <u>및 정원-----</u>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02</u>	<u>309</u>	+7
·	·	·	
·	·	·	
일반직 계	<u>297</u>	<u>304</u>	+7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6</u>	<u>17</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21</u>	<u>20</u>	-1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66</u>	<u>67</u>	+1
·	·	·	
·	·	·	
<u>행정 사무관 · 임업 사무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전산사무관	<u>4</u>	<u>5</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0</u>	<u>43</u>	+3
•	•	•	
•	•	•	
<u>임업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13</u>	<u>320</u>	+7
•	•	•	
•	•	•	
일반직 계	<u>308</u>	<u>315</u>	+7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7</u>	<u>18</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20</u>	<u>19</u>	-1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69</u>	<u>70</u>	+1
•	•	•	
•	•	•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전산사무관	<u>4</u>	<u>5</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5</u>	<u>48</u>	+3
•	•	•	
•	•	•	
<u>임업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u>	<u>35</u>	+3
일반직 계	<u>32</u>	<u>35</u>	+3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u>	<u>5</u>	+1
·	·	·	
·	·	·	
임업연구사	<u>9</u>	<u>11</u>	+2
·	·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u>	<u>36</u>	+3
일반직 계	<u>33</u>	<u>36</u>	+3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u>	<u>5</u>	+1
·	·	·	
·	·	·	
임업연구사	<u>9</u>	<u>11</u>	+2
·	·	·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15</u>	<u>719</u>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700</u>	<u>704</u>	+4
일반직 계	<u>700</u>	<u>704</u>	+4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24</u>	<u>25</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45</u>	<u>48</u>	+3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24</u>	<u>12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23</u>	<u>727</u>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708</u>	<u>712</u>	+4
일반직 계	<u>708</u>	<u>712</u>	+4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24</u>	<u>25</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53</u>	<u>56</u>	+3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24</u>	<u>12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